

# TaxFlash



## Tax Amnesty Implementation Rules 조세사면제도 시행규정

2016년 7월 1일 조세사면제도 법안 No.11/2016(Law-11)이 완료된 이후 재무부와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시행규정을 배포하였다:

1. MoF Regulation No.118/PMK.03/2016 (PMK-118) – Law-11의 시행령
2. MoF Regulation No.119/PMK.08/2016 (PMK-119) – 역외자산의 국내 이전 절차와 투자형태 규정;
3. MoF Decree No.600/KMK.03/2016 (KMK-600) – 조세사면제도를 통해 역외에서 이전된 자금을 수용하도록 지정된 은행들
4. DGT Regulation No.PER-06/PJ/2016 – 조세사면제도와 관련된 납부 코드가 기재된 보석금 납부 증빙 양식;
5. DGT Regulation No.PER-07/PJ/2016 – 조세사면제도 문서화와 지침서;
6. DGT Circular Letter No.SE-30/PJ/2016 - 조세사면제도 실행 가이드;
7. DGT Letter No.S-184/PJ./2016 – 조세사면프로그램의 공표;
8. DGT Letter No.S-872/PJ.09/2016 – 조세사면제도의 적용, 상담, 서비스.

Taxflash No.9/2016에 Law-11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Law-11과 관련한 주요 시행 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ubmission 제출

조세사면 재산 신고서 (*Surat Pernyataan Harta untuk Pengampunan Pajak/SPHPP*)는 납세자가 등록되어 있는 세무서 또는 재무부에서 규정한 특정 장소(e.g. 홍콩 소재 인도네시아 총영사관, 싱가포르 및 런던 소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등 기타 재무부 지정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경우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동 위임장은 민법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SPHPP가 직접 제출되지 않거나,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이 없거나 또는 서류가 미비한 경우, SPHPP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SPHPP는 제출한 자료와 함께 납세자에게 반송된다.

SPHPP가 세무서(또는 다른 유효한 장소)에 제출되면, 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역세무서장이 조세사면승인서(*Surat Keterangan Pengampunan Pajak/SKPP*)를 발급하게 된다.

## Payment of Redemption Money 보석금의 납부

보석금의 경우 Tax Code No.411129와 Deposit code NO.512를 사용해서 지정된 은행을 통해 납부하여야 한다.

## Taxpayers with gross turnover of up to Rp4.8 billion 연매출 48억 Rp 이하인 납세자

연간 매출액이 48억 Rp 이하인 납세자들은 신고재산가액에 따라 최대 2%의 낮은 요율의 적용이 가능하다. 해당 요율은 사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납세자에 한해서 적용가능하며, 근로소득 또는 전문직 소득(e.g. 의사, 공증인, 회계사, 건축가 또는 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매출액은 다음에 기초해서 결정된다:

- a. 2015년 1월 부터 12월까지의 매출액 확인서
- b. 납세자의 최근 소득세 신고서

## Special Purpose Vehicle (SPV)

납세자가 간접적으로 SPV 를 통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과 부채 명세 중 납세자의 재산 지분 및 관련 부채를 신고하여야 한다.

## Tax arrears 세금 체납

조세사면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조세사면재산 신고서(SPHP) 제출 이전에 모든 체납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PMK-118 은 세금 체납(예외적인 행정 제재들은 제외)을 다음에 기초한 미납부 세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환급받지 못하는 세액을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기 고지서와 결정문에 있는 행정제재들은 조세사면제도에 따라 중단된다.

- a. 확정 통지서
- b. 과소납부 세금추징 결정서
- c. 과소납부 가산세 추징 결정서
- d. 수정 결정서
- e. 이의신청 결정서
- f. 조세 소송
- g. 소송 판결문
- h. 법원 재심 판결문

추가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a. 세금 체납액은 세금 추징비용을 포함
- b. 세금 연체금액에 대하여 일부만 납부한 경우, 동 금액은 DGT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제재와 조세규정에 비례하여 배부
- c. 만약, DGT 자료에 행정 제재와 관련한 세부 계산이 없는 경우, 행정 처분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48%로 간주.

### **Revocation of ongoing legal processes relating to taxpayer's tax affairs 납세자의 세무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법적 절차들의 철회**

조세사면제도를 신청하기 위한 또 다른 요건은 납세자의 세무와 관련한 법률적 절차들을 철회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영구적인 세법원칙과 이러한 처분 또는 결정하에서 과세 원칙이 될 이러한 법적인 산출물에 대한 DGT 또는 법원의 처분 또는 결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SPHPP 제출 이전에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Consequences of the restrictions under the Tax Amnesty 조세사면제도에 따른 주요 권리 제한**

조세사면제도를 이용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다.:

- (1) 최근 회계연도말까지 발생한 세무상 이월 결손금의 소멸. 세무상 이월 결손금이 이미 이월되어 공제된 경우 납세자는 해당 효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 (2) 납세자들은 최근 회계기간말까지 발생한 법인세, 부가세, 사치세의 과다 납부세액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만약 환급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함.
- (3) 납세자들은 Law-11의 발효 이후 이후 최근 회계연도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사치세의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상기 (1)과 (2)와 관련한 세무신고서의 수정에 따른 행정 처분은 면제된다.

### **Amendments to the Approval Letter 승인서류의 개정**

재무부는 승인서서 오타나 계산오류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서를 수정할 수 있다.

만약 오타나 계산 오류로 보석금이 과소계산된 경우

- a. 세무서에서 오타 또는 계산 오류에 대한 확인 서한을 발송.

- b. 납세자는 과소 납부액에 대하여 확인 서한이 발송된 날로부터 14 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액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완료시 세무서에서는 수정증인서를 발부
- c. 납세자가 14영업일 이내에 과소납부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세무서는 추가 서안을 직권으로 발송하고, 납부 금액에 따라서 자산의 가치를 직권으로 조정하여 차이분을 미확인 자산으로 분류. 이러한 미확인 자산은 추가적인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 과세 및 200%의 과태료 부과

만약, 오타나 계산 오류로 보석금이 과다 계산된 경우:

- a. 세무서는 오타 및 계산 오류에 대한 수정 증인서를 발송.
- b. 수정 증인서 발부 이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세무상의 납부액과 상계 또는 환급

### Submission of new SPHPP 추가 SPHPP의 제출

납세자는 조세사면기간 동안 SPHPP를 3번까지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의 경우에 두번째 또는 세번째 SPHPP를 제출할 수 있다.

- (1) 첫번째 또는 두번째 SPHPP에서 신고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자산에 대한 신고
- (2) 납세자가 인도네시아 내 재산반입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 (3) 승인서(SKPP)가 발급된 이후 국내 신고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인 3년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두번째 또는 세번째 SPHPP 제출방법은 첫번째와 같으며, 지역 세무서장은 신규 신고서(SPHPP)에 대한 승인서(SKPP)를 발행하여야 한다.

보석금은 두번째 또는 세번째 제출기간에 적용가능한 요율로 수정 계산될 것이다. 만약, (2) 또는 (3)의 신고인 경우 높은 요율(4%, 6%, 10%)이 적용되는 국외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만약 신규 SPHPP가 보석금의 과다 납부로 발생하였다면, 과다 납부액은 두번째 또는 세번째 SPHPP 제출 이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세무상 납부액과 상계 또는 환급된다.

### Procedures for offshore assets repatriation 국외 자산의 상환 절차

Law-11 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가 낮은 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 자산의 국내 이전 및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PMK-119 는 2015 년 12 월 31 일 이후 승인서(SKPP) 수령 전까지 인도네시아로 이전된 펀드도 국외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산들도 낮은 납부요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외 자산 이전을 위한 투자리스트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투자되어야 한다.

PMK-119 에 명시된 국외 자산의 반입 및 투자 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SKPP 를 수령한 후 재무부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특별 계좌(*Rekening Khusus*)를 개설하여야 한다. 재무부 규정 KMK-600 에서 보석금 수납 은행 77 개가 지정되어 있다.
- b. 납세자는 국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자금을 재무부에서 지정한 인도네시아 내의 은행 또는 지점의 특별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이체한 시점부터 3 년의 투자제한 규정이 시작된다.

- c. 자금의 이체가 재무부에서 지정한 은행의 국외 지점에서 수행된 경우, 국외 지점은 해당 자금을 해당 일자의 업무 종료시점 이전에 인도네시아로 이체하여야 한다.
- d. 지정은행으로 이체된 자금은 은행, 투자 관리자, 또는 증권 중개인을 통해서 재무부에서 규정한 투자 리스트에 따라 투자를 하여야 하고, 조세사면제도 프로그램에 따라 “Gateways”라고 불리는 곳에서 투자금이 관리된다. Gateways 의 분류와 기준은 PMK-119 에서 규정되어 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 a. 인도네시아 국채
- b. 국영기업(SoEs)의 회사채
- c. 정부 소유의 금융기관의 채권
- d. 재무부 지정 은행에의 금융 투자
- e. 금융감독위원회(Otoritas Jasa Keuangan)의 감독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민간회사의 회사채
- f. 정부와 민간 협력방식을 통한 사회 기반시설(인프라) 투자
- g. 재무부령에 따른 정부 우선 순위 실물 부문에의 투자
- h.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형태의 투자

PMK-119 는 상기 a - h 하의 투자서식에서 명시되어있는 세부 투자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a. 중기 어음을 포함한 채무증권
- b. Sukuk(인도네시아 국채);
- c. 주식
- d. 뮤추얼펀드
- e. 자산담보부 증권
- f. 부동산투자펀드
- g. 정기에금
- h. 보통예금
- i. 당좌예금
- j. 보험, 금융회사, 연금펀드, 또는 금융감독위원회(OJK)의 승인을 얻은 벤처 캐피탈 상품을 포함한 기타 재무적 투자자산

Gateways 를 통한 투자는 해당 은행에서 담보 대출로 사용될 수 있다.

### **Assets reporting 자산보고**

Law-11 에서는 낮은 효율을 적용받는 납세자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무부에 다음 사항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a. 국외 자산의 반입 및 투자 실행에 대해서 3 년 동안 매 반기마다 보고
- b. 국외로 이전될 수 없는 국내 자산의 상태에 대해 3 년간 매 반기마다 보고

상기 보고서들은 1-6 월분에 대해서는 7월 20 일까지, 7-12 월분에 대해서는 1 월 20 일까지 제출되어야 한다. 일정이 준수되지 않을 경우 세무서는 경고장을 송부하며, 납세자는 14 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14 일 이내에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a. SPHPP 에 신고된 순 자산은 2016 회계연도에 추가소득으로 간주되고 현행 세법에 따른 소득세 및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 b. 기 납부한 세액은 상기 세무 사항에 대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행정제재는 월별 2%의 가산세가 최장 24 개월동안 부과될 것이고, 2017 년 1 월 1 일부터 세무결과 통지서가 발행될 시점까지 해당될 것이다.

**Income Tax exemption on asset title transfer 자산명의 이전에 따른 소득세 면제**

납세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은 토지, 건물 또는 주식의 경우 납세자의 이름으로 이전이 되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 명의 이전에 따른 소득세는 면제가 된다.

-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수행된 토지와 건물의 명의 이전 신청 또는 주식 이전 합의서
-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수행된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가 이전 불가능할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 납세자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공증확인서

납세자가 등록된 세무서에 소득세 면제 서한(Surat Keterangan Bebas/SKB )을 제출하게 되면 소득세가 면제된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 권리 이전을 하기 전에 SKB 를 반드시 먼저 수행하여야 한다.

SKB 적용을 위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 또는 건물	주식
SKPP 사본	SKPP 사본
가장 최근의 토지 또는 건물의 세금 고지서 사본 (Surat Pemberitahuan Pajak Terhutang Pajak Bumi dan Bangunan)	설립증서 사본 및 주식이전시의 정관
납세자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한	납세자의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공증서한
토지 또는 건물 이전의 판매/구매/수여 사본	

세무서는 SKB 신청서를 수령한 후에 5 영업일 이내에 SKB 를 발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서는 승인된 서한으로 간주되어 세무서는 2 영업일 이내에 SKB 를 발급하여야 한다.

SKB 는 이전 당사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하다. 만약, 납세자가 해당 자산을 2017 년 12 월 31 일까지 이전하지 못하였을 경우, 동 자산은 관련 법규에 따라 일반 세무항목으로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 Korean Business Desk Contact

정태훈 회계사 (taehun.jung@id.pwc.com)

박승찬 회계사 (park.seungchan@id.pwc.com)

## Your PwC Indonesia contacts

**Abdullah Azis**

abdullah.azis@id.pwc.com

**Adi Poernomo**

adi.poernomo@id.pwc.com

**Adi Pratikto**

adi.pratikto@id.pwc.com

**Alexander Lukito**

alexander.lukito@id.pwc.com

**Ali Widodo**

ali.widodo@id.pwc.com

**Andrias Hendrik**

andrias.hendrik@id.pwc.com

**Anthony J. Anderson**

anthony.j.anderson@id.pwc.com

**Anton Manik**

anton.a.manik@id.pwc.com

**Antonius Sanyojaya**

antonius.sanyojaya@id.pwc.com

**Ay Tjhing Phan**

ay.tjhing.phan@id.pwc.com

**Brian Arnold**

brian.arnold@id.pwc.com

**Dany Karim**

dany.karim@id.pwc.com

**Deny Unardi**

deny.unardi@id.pwc.com

**Engeline Siagian**

engeline.siagian@id.pwc.com

**Enna Budiman**

enna.budiman@id.pwc.com

**Felix MacDonogh**

felix.macdonogh@id.pwc.com

**Gadis Nurhidayah**

gadis.nurhidayah@id.pwc.com

**Gerardus Mahendra**

gerardus.mahendra@id.pwc.com

**Hanna Nggelan**

hanna.nggelan@id.pwc.com

**Hasan Chandra**

hasan.chandra@id.pwc.com

**Hendra Lie**

hendra.lie@id.pwc.com

**Hyang Augustiana**

hyang.augustiana@id.pwc.com

**Ivan Budiarnawan**

ivan.budiarnawan@id.pwc.com

**Kexin Lim**

lim.kexin@id.pwc.com

**Laksmi Djuwita**

laksmi.djuwita@id.pwc.com

**Lukman Budiman**

lukman.budiman@id.pwc.com

**Mardianto**

mardianto.mardianto@id.pwc.com

**Margie Margaret**

margie.margaret@id.pwc.com

**Otto Sumaryoto**

otto.sumaryoto@id.pwc.com

**Parluhutan Simbolon**

parluhutan.simbolon@id.pwc.com

**Peter Hohtoulas**

peter.hohtoulas@id.pwc.com

**Runi Tusita**

runi.tusita@id.pwc.com

**Ryosuke R Seto**

ryosuke.r.seto@id.pwc.com

**Ryuji Sugawara**

ryuji.sugawara@id.pwc.com

**Soeryo Adjie**

soeryo.adjie@id.pwc.com

**Sutrisno Ali**

sutrisno.ali@id.pwc.com

**Suyanti Halim**

suyanti.halim@id.pwc.com

**Tim Watson**

tim.robert.watson@id.pwc.com

**Tjen She Siung**

tjen.she.siung@id.pwc.com

**Turino Suyatman**

turino.suyatman@id.pwc.com

**Yessy Anggraini**

yessy.anggraini@id.pwc.com

**Yuliana Kurniadjaja**

yuliana.kurniadjaja@id.pwc.com

**Yunita Wahadaniah**

yunita.wahadaniah@id.pwc.com



[www.pwc.com/id](http://www.pwc.com/id)

If you would like to be removed from this mailing list, please reply and write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 or send an email to [maria.purwaningsih@id.pwc.com](mailto:maria.purwaningsih@id.pwc.com).

**DISCLAIMER:** This content is for general information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used as a substitute for consultation with professional advisors.

© 2016 PT Prima Wahana Caraka.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Indonesia member firm,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http://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